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회부일자 : '96. 11. 16 화순군수
- 나. 상정일자 : '96. 11. 18 (제49회 임시회 제1차 산업. 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 가. 제안설명자 : 산림과장 양정희
- 나. 제정이유

○ 농림수산업분야의 자주적 재원을 확충하여 농림어업인의 수요를 충족 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정착의욕을 고취시키고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함.

다. 주요내용

(1) 기금의 조성 (안 제3조)

- 화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한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약 10억원)
- 화순군수의 출연금 (기금총액이 30억원에 이를때까지 매년 2억원씩 출연)
-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 잡수익

(2) 심의위원회 구성(11명) (안 제4조)

- 위원장 : 부군수
- 당연직 위원 : 산업과장, 산림과장, 농촌지도소장, 농협군지부장, 화순축협장
- 위촉직 위원 : 군의원 2명, 농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명

(3) 융자금 지원(연리 4%) (안 제7조)

- 융자한도 : 개인은 2천만원 이내, 단체는 5천만원 이내 (총사업비의 7% 이하)
- 대부기간 :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2년, 3년, 5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4)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특별회계 설치 (안 제13조)

- 세입 : 군수출연금, 용자상환금, 이자 및 기타수입
- 세출 : 용자금, 사업추진 필요경비

(5) 부칙

-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근성)

-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에 알맞는 농정을 추진하기 위한 농림수산업 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

5. 토론요지

- 김성인 위원으로부터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농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화순군의 농업인구 비율이 48%인점을 감안하여 동조례 제14조 제2항의 농림수산업 진흥기금을 30억에 이를때까지를 100억으로 하고 매년 2억원이상 특별회계의 세입에 계상한다를 8억원으로 하자는 수정안 제출

6. 심사결과

『수정가결』

- 당초 : 매년 2억원이상 출연 총기금 30억원에 이를때까지
수정 : 매년 8억원이상 출연 총기금 100억원에 이를때까지
- 내용 : 영농의욕은 왕성하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장기저리로 융자하여 영농의식 고취

7. 첨 부 :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6. 11.

제 출 자 : 화 순 군 수

의안	
번호	

1. 제안이유

농림수산업분야의 자주적 재원을 확충하여 농림어업인의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정착의욕을 고취시키고 주민소득증대에 기여코자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조성 (안 제3조)

- 화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한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약 10억원)
- 화순군수의 출연금(기금총액이 100억원에 이를때까지 매년 8억원 이상씩 출연)
-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 잡수익

나. 심의위원회 구성 (11명) (안 제4조)

- 위원장 ; 부군수
- 당연직위원 : 산업과장, 산림과장, 농촌지도소장, 농협군지부장, 화순축협장
- 위촉직위원 : 군의원 2명, 농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명

다. 융자금 지원 (연리 4%) (안 제7조)

- 융자한도 : 개인은 2천만원 이내, 단체는 5천만원 이내 (총사업비의 70% 이하)
- 대부기간 :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2년.3년.5년 거치 3년분할상환

라.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특별회계 설치 (안 제13조)

- 세입 : 군수출연금, 융자상환금, 이자및 기타수입
- 세출 : 융자금, 사업추진 필요경비

마. 부칙

-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농어업인 육성과 농어촌발전에 필요한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업"이라 함은 농업, 임업, 축산업 및 수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수축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축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 가공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화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한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2.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기타 잡수익.

제4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①기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정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산업과장, 산림과장, 농촌지도소장, 농협중앙회화순군지부장, 화순축협장으로하고, 위촉위원은 화순군의회의원 2명과 농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명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장 자 금 운 영

제5조 (대상사업) ①용자대상사업은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크며 성공이 확실한 농.림.수.축산물의 생산 및 가공.판매등에 따른 사업으로 한다.

②기타 군수가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으로 따로 권장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6조 (용자대상자) ①용자대상자는 농어촌에 정착의욕을 갖고 농어업인소득증대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생산자단체와 농어업에 열의가 있고 생산의욕이 강한 농어업인으로 한다.

②군수가 용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전항의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용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용자를 하지 아니한다.

제7조 (용자금) ①용자금은 개인은 1인당 2,000만원이내, 단체는 1단체당 5,000만원 이내로 하되, 총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용자한도액 또는 용자금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②용자금의 대출금리는 연4%로 하고, 연체이자율은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에 따른 연체 이율을 적용한다.

제8조 (용자금의 대부신청) ①용자금의 대부를 받고자하는 생산자단체대표 및 농어업인은 용자신청서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용자신청서에는 2명이상이 연대보증을 하여야 하며, 이때 보증인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한 세액이 연간 10,000원이상을 납부한 실적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제6조 제1항에 규정한 불가피한 경우로 농어업인 개인에게 2천만원이상 대부될 경우에는 3인이상이 연대보증하여야 하며, 생산자단체에 5천만원이상 대부할 경우에는 5인이상이 연대보증하여야 한다.

제9조 (중복용자의 금지) 용자금을 대부받은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인에 대하여 용자금 상환이전에는 다른 사업을 위한 중복용자를 할 수 없다.

제10조 (대부기간)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한을 1년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1. 사업수입기간이 2년이내인 단기성사업 - 2년거치 3년분할상환
2. 사업수입기간이 2년이상 5년이내인 중기성사업 - 3년거치 3년분할상환
3. 사업수입기간이 5년이상인 장기성사업 - 5년거치 3년분할상환

제11조 (융자금의 회수)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생산자단체, 농어업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관할 구역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융자금을 목적외 사용하였을 때.

②제1항의 융자금 상환이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 (감독) 군수는 자금의 용자를 받은 생산자단체, 농어업인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시는 물론 자금의 운영관리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회계관리

제13조 (특별회계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4조 (세입, 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군수 출연금.
2. 융자상환금
3. 이자 및 기타수입

②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기금 총액이 100억원에 이를 때까지 매 회계년도 마다 8억원 이상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계상한다.

③특별회계의 세출은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을 위한 융자금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5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운영에 준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등) ①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제1항에 규정한 폐지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한다.